

특집

한국대학, UR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UR/TRIPs 협정과 저작권

김 문 환

국민대 법학과 교수

1. TRIPs 협정의 성립배경

1)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가트(GATT)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칭이다. GATT는 관세 이외의 무역제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관세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인하하며, 나아가 궁극에는 이를 철폐함으로써 세계자유무역을 실현하려는 국제적 협정이다. 이 협정을 실시하기 위해 1986년부터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1993년 12월 15일 타결되었는 바, 이는 국제경제법의 장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UR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계무역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설립된 점이다. 이 WTO는 UR의 여러 협정을 실시하는 기구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에

의해 전후 50년 가까이 지속해온 GATT는 이제 '국제기관'이 되었다. 둘째는 시장 액세스인 바, 평균 40% 정도의 관세인하가 실시되었다. 셋째는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에 관한 원칙의 확립이다. 이는 150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에서 통상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원칙의 확립을 통해 자유화를 촉진하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강화에 대하여 국제적 합의가 성립한 것을 의미한다. 넷째는 국제 툴의 확립인데 구체적으로는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등에 관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적 툴을 확립한 것이다. 다섯째는 농업에 관한 합의로서 이는 모든 농산물에 관한 수입제한의 폐지와 관세화의 도입 및 보조금의 삭감이다. 여섯째는 국제섬유협상(MFA)의 GATT 일반률에의 통합과 정부조달에 대한 절차의 정비, 적용대상의 확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¹⁾

2) GATT와 지적 재산권

① WIPO/UNESCO

전통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의 여러 관련 협약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지적 재산권 관련의 세계적 기구로는 크게 WIPO와 UNESCO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UN의 전문기관으로서 WIPO가 중심이 되어 다루어 왔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파리조약이나 베른협약 등의 기존 협약들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정체적 상황을 타개·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무역마찰을 계기로 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 등 선진국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적 재산권에 관한 논의가 GATT 체제내 UR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자국의 무역수지개선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지적 재산권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그간 통상법상 무역보복조치에 따른 역효과를 고려하고 개별적 쟁점과 보다는 다자간협상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합치된 결과라 하겠다.

② 우루과이라운드

가. 논의의 시작 — 푸타 멜 에스테 선언

GATT는 1947년 GATT성립시의 제1회 관세교섭 이래 1973~1979년의 동경라운드까지 7회의 라운드 교섭을 거쳤으며, 이 사이에 주요 선진공업국의 평균관세율은 GATT 탄생시의 35%에서 동경라운드 후에는 4.7%로 크게 인하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의 저하와 비례하여 비관세 조치가 계속 커지고 있고, 자유로운 무역을 한층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 이외의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을 삽

감·철폐할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었다.

1986년 9월 GATT 각료회의가 우루과이의 푸타 멜 에스테에서 개최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업, 세이프가드, 서비스 등과 함께 부정상품무역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의 무역적 측면'(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다.²⁾

나. 우루과이라운드와 지적 소유권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지적 소유권이 거론된 배경은 첫째, 컴퓨터, 정보기기, 비행기 등 하이테크 제품에 관한 무역이 확대되면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지적 소유권의 보호 태도에 따라 각국의 경쟁력이 좌우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지적 소유권을 불충분하게 보호함에 따라 선진외국기업이 커다란 손해를 입고 있고, 지적 소유권 보호의 자세가 무역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특히 미국은 외국의 부적절한 지적 소유권의 보호로 미국 기업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문제화하였다.

셋째, 미국에서는 특히 1980년대 이후 철강, 자동차 등의 기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짐에 따라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의 향상이나 국가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침단기술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적 소유권 보호의 강화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3) 민간3극합의³⁾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을 목표로 한 활동을 주도한 것은 미국정부이지만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미국의 주요 13개 기업은 미

1) 松下滿雄, “國際通商法の 將來”, 『法學教室』, No. 162, 1994년 3월, 4면.

2) Friedl Weiss, *Trips in Search of an Itinerary: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Edited by Giorgio Sacerdoti, Liberalization of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Uruguay Round of Gatt, University Press Fribourg, Switzerland, 1990, P. 87.

3) 民間三極合意에 대해서는 『共同文書公表に いたるまでの 日米歐民間三極會議の 經過』, 經團連 開發部, 1988년 6月 13일, 『知的財産権に 關する GATT協定の基本的＼組み(假譯)』, 知的所有権委員會(美國), 經濟團體連合會(日本), 歐洲產業聯盟(歐洲), 1988. 6 참조.

국 지적소유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IPC)를 결성한 뒤 유럽의 경제단체 연합체인 유럽산업연맹(Union of Industrial and Employers Confederation of Europe, UNICE) 및 일본의 경단련파⁴⁾ 민간삼국회의를 결성하였다. 이 민간삼국회의는 민간단체의 모임이지만 가트의 지적 소유권 교섭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선진제국 기업 단체의 의견을 집약하여, 그후 가트에서의 교섭사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4) GATT/TRIPs 협정

① 협정의 개요

1987년 TRIPs 협상그룹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이후 1990년 11월까지 이 그룹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상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마침내 동년 11월에는 동 협상의 기초자료 형태로 그간의 협상결과를 조문의 형태로 정리하여 제7차 의장보고서로서 의장이 협정초안을 제출하였다.

이 협정초안은 TRIPs 협상의 진행상태를 설명하고 미합의된 쟁점을 명시한다는 의미에서 2개의 안으로 각국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이 중 A초안은 선진국 그룹의 입장을, B 초안은 개발도상국 그룹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이다.⁵⁾ 그후 협상은 선진국 그룹의 주도 아래 진행되어 왔으며, 1991년 12월 20일에는 GATT사무국에서 최종협정 초안을 동사무총장 둔켈(Arthur Dunkel)이 발표하였다.

1993년 12월 15일 최종 확정된 우루과이라운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UR/TRIPs)도⁶⁾ 둔켈 최종협정초안과 같이 전문과 총 7장 73개조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조상품의 교역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곧 둔켈초안의 내용과 TRIPs의 최종안이 거

의 같다라는 의미이다. 본 협정의 주요내용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TRIPs교섭참가국(108개국) 모두가 종래 국제협약에서 보호해온 특허권·의장·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반도체칩회로배치설계권·영업비밀 등 새로운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기준 및 Enforcement(권리의 집행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이 포괄합의의 내용은 종래의 파리조약 등의 지적재산관련 조약과 비교하여 ① 보호수준이 높여져 있으며, ② 최혜국대우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③ Enforcement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④ 분쟁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등 획기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지적재산권 조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파리조약의 실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수준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이에 plus α를 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TRIPs협정 제2조).

또한 최혜국대우(제4조)는 종래의 지적재산관련 조약에 없었던 것이며, TRIPs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TRIPs의 보호수준을 상회하는 2국간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TRIPs 참가국에도 그 이익을 똑같이 공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의약품 특허 등에 관한 한·미협약(1986년), 한·EC협약(1991년), 한·일협약(1993년)은 TRIPs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②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과 대응

우리는 1986년 7월 한미협정을 통하여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고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하게 되었다.⁷⁾ 또한 1992년 12월 15일부터는 영업비밀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1993년 9월 1일부터는 반

4) 御船 昭, “知的所有権に 關する 民間三極會合”『シユリスト』, No. 941, 1989년 9월 15일, 88면 참조.

5) 鄭陳燮, 『國際知的所有權法』, 育法社, 1992년, 152면.

6) 『우루과이라운드 知的財產權 協商에 대한 우리의 對策 - 著作權 分野를 中心으로 -』,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1991년 12월, 47면.

7) 김주학, 『韓·美間 知的所有權協商의 現況과 展望』, 釜山地方辯護士會, 제 11 호, 1993년 12월, 33면.

도체회로배치설계권이 보호받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적 소유권 법체계는 선진국의 수준과 그리 못하지 아니하다. 이는 곧 전술한 미국뿐만 아니라 EC와의 지적 재산권 협상에서 항상 시달려온 탓으로 국내법의 수준을 높이게 된 것이며, 그에 따라 이번의 UR/TRIPs 협정을 따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규의약품이나 농약품의 제조허가를 받기 위한 미공개의 정부제출자료도 영업비밀로 보호하게 됨에 따라⁸⁾ 이를 관련업계에서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특허·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등에 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난 1993년 말에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여 대여권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동시에 특허법과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의 산업체재산권 4법도 부분적 손질을 가하였는 바.⁹⁾ 그에 따라 예를 들면 의장의 보호기간이 종래의 8년에서 UR/TRIPs 협정에 맞게 10년으로 늘어났다(개정법 제 40조 1항). 그러나 앞으로도 특허법·의장법·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반도체배치설계법 등의 관련법규를 금년 말까지 다시 개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개정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2. TRIPs 협정과 저작권

1) 개설

저작권 분야에서 국제협약과의 관계는 주로 베른협약과 관련하여 의논되었던 바, 각국은 대체로 베른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였다.¹⁰⁾

UR/TRIPs 협정에서 저작권과 직접 관련된 사

항은, 먼저 체약국은 베른협약(1971)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9조 1항), 컴퓨터프로그램은 동협약에 따른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고(10조 1항),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 베이스도 보호(10조 2항)하였다. 또한 대여권과 관련하여 최소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상업적 대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영상저작물에 대하여는 대여로 인해 복제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동의무에서 면제되며(10조), 음반의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램의 대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작권의 일반적인 존속기간은 50년이며(12조), 저작인접권으로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50년, 방송사업자는 2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14조 5항).

2) TRIPs 협정의 내용

① 보호기준

동 협정 제 2 장(보호기준)의 제 1 절 내지 제 8 절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포함한 8개 분야에 걸쳐 '지적재산권의 효력, 범위 및 이용에 관한 기준'(Standard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기본적인 보호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협정의 전체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가. 베른협약과의 관계(제 9 조 제 1 항)

동 장의 제 9 조에서는 '베른협약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 1 항에서는, 체약국은 베른협약(1971년 개정협약) 제 1 조 내지 제 21 조 및 부속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베른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중에는 베른협약 상의 원칙적인 소급보호와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8) 『UR協定의 法的 考察(下)』, 법무부, 1994년, 432면.

9) 이들 產業財產權 4法은 모두 1993년 12월 10일 공포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施行한다.

10) 『우루과이라운드 知的財產權協商에 대한 우리의 對策—著作權 分野를 中心으로』(著作權研究資料 9),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1991년 12월, 43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 조항의 단서에는 베른협약 제6조의 2(저작인격권)의 적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¹¹⁾

나. 보호범위(제9조 제2항)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 미치나, 아이디어·절차·운용방법이나 수적 개념 등에까지는 확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저작권 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 자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절차 등을 보호하는 산업체산권과 구별되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¹²⁾

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제10조 제1항)

동 장의 제10조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도록 하며 그 범위는 원시코드(source code)나 목적코드(object code)를 묻지 않는다.

라.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제10조 제2항)

협정에는 그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하여 지적 창작물이 되는 데이터나 기타 자료의 수집물은 기계판독 형태나 다른 형태로 존재하느냐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보호되며, 그러한 보호는 데이터나 자료 그 자체에 존재하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지난 1993년말 세로이 개정된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등에 의한 데이터 베이스 이외에 전화번호부, 배과사전, 인명록 등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 수록하여 이용하기 쉽게 만든 것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마. 대여권(rental rights) 문제(제11조)

동 장의 제11조에서는 “최소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협약국은 보호 저작물

의 원본이나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자나 그 권리승계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체약국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그러한 대여로 인해 당해 협약국에서 저작자와 그 권리승계인에게 부여하는 배타적 복제권을 본질적으로(materially) 침해하는 광범위한 복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광범위한 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대여권의 인정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의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여권 적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1994년 7월 1일 시행예정) 음반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에 한하여 대여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바. 보호기간(제12조)

동 장의 제12조에서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사망시 기산주의 이외의 근거에 의하여 기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허락받은 발행년도 다음해로부터 50년, 저작물의 완성후 50년내에 허락받은 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완성년도 다음해로부터 50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망시 기산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사진·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정하고 있다.

11) 이는 미국이 자국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 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들어 그간 규정화에 반대해 온 부분이다.

12) 『UR과 著作権』, 문화체육부, 1993년 12월, 8면.

3. 베른협약의 가입문제

우리나라는 1987년에 UCC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지금껏 베른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번 TRIPs 협정의 타결로 베른협약에의 가입이 절박하게 되었다. 그 점에서 가입의 문제를 알아본다.

1) Berne / UCC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과 더불어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1986년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국제외교회의에서 영국, 독일, 스위스 등 10개국에 의하여 체결되었는 바,¹³⁾ UCC 보다 높은 수준의 저작권보호와 광범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1971년 파리개정에서의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한 일부개정을 끝으로 개정이 없으며, 1994년 1월 현재 105개국이 가입하고 있다¹⁴⁾ (이에 비해 UCC 회원국은 94개국이다).

2) 베른협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관계

1986년 우리나라가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 주로 독일과 일본의 저작권법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튀니지 모델 저작권법(Tunis Model Law Copyright for Developing Countries)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법들은 베른협약에 기초 또는 동협약의

창설에 관여했거나 그에 가입한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베른협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법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베른협약과 유사한 체계로 되어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기간이나 저작자가 갖는 권리 및 저작권의 제한 등에서 보듯 그 실체적 특성도 동협약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베른협약 사이에는 차이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의 강제(법정)허락제도나 소급효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것이며, 약간의 저작물 보호 등에서 상이점이 나타난다.

3) 가입시의 문제점

① 서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베른협약과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관계는 대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 점에서 베른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커다란 곤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급효의 문제 등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동협약의 소급효의 문제는 만일 동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② 소급효문제

가. 베른협약 18조

일반적으로 소급효란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요건의 효력이 법률시행전 또는 법률요건 성립시 이전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¹⁵⁾ 베른협약의 소급효 원칙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바, 동협약 18조의 원칙과 예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동협약 규정의 입안과 해석에서 여러 양태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그 적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

13) Sam Ricketson,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1886-1986*(Center for Commercial Law Studies, 1987), pp. 3~80 참조.

14) WIPO, ed., "Treaties(Status on January 1, 1994)", *Copyright-Monthly Review of WIPO*, (Jan. 1994) : p. 7~9.

15) 법률신문사 편, 『신법률학대사전』, 1992, 990~91면.

추어 거기에는 그 예외조항과 관련한 해석 여지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나. TRIPs 협정에서의 소급보호

TRIPs 협정은 저작권보호에 있어서 베른협약에 따른 소급보호를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특정 회원국에서 TRIPs 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당시에 이미 일반공중의 공유에 속하게 된(in the public domain)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급보호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⁶⁾ 베른협약에서는 회원국에서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일반의 공유에 속하게 된 경우 이외에는 언제나 소급보호를 원칙으로 한다고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TRIPs 협정에서는 공유로 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소급보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그와 같이 완화된 소급보호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TRIPs 협정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라도 그를 위한 상당한 투자(significant investment)가 TRIPs 협정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구입한 음반, 컴퓨터프로그램, 영상저작물에 관해서는 대여권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TRIPs 협정은 규정하였다.¹⁸⁾ 우리나라가 베른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최소한 TRIPs 협정에 열거된 소급보호제한은 원용하여 소급보호에 관한 유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¹⁹⁾

③ 번역권 강제허락제도

우리는 선진외국의 저작물을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점에서 번역권은 주요한 권리로서 취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베른협약상의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락제도는 적어도 법제상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

한 번역권 강제허락제도는 베른협약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할 때 동협약상의 번역권 강제허락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동협약에 맞추어 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 문제는 세계저작권협약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동제도와 연관하여서는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그리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3자의 연관 문제가 있다. 세계저작권협약이 베른협약과의 관계를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에 동시 가입한 국가간에는 베른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협약간의 문제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베른협약과는 상치되기 때문에 동협약상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는 개정으로가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제도가 베른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²⁰⁾ 즉, 세계저작권협약 가입국에만 우리의 동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미국과 일본 등이 국제협약 가입시 이러한 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자국의 저작권 질서를 보다 잘 보전하였다는 전례를 생각할 때 일응 타당성이 있는 방안이라 보인다.

4. 결 어

1994년 3월 18일 국회 UR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한 전술인이 UR의 타결로 “우리 경제는 UR의 가랑비에 속옷이 젓는다.”고 하였는데,²¹⁾ 종합

16) TRIPs 협정 제70조 제2항 및 제3항.

17) TRIPs 협정 제70조 제4항.

18) TRIPs 협정 제70조 제5항.

19) 丁相朝, “베른協約 邊及保護 規定에 관한 考察”,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의 진단과 전망』, 1993년 6월 29일 세미나자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2면.

20) 尹熙昌, “베른協約 加入에 대한 提言”, 『季刊著作權』, 제5호, 1989년 봄, 43면.

21) 李漢久, UR과 政策課題(공산품시장관련) : (국회공청회자료, 1994년 3월 18일), 10면 참조.

적으로 보면 지적 재산권 분야는 이미 속옷까지 젖어 있으며 그것도 가랑비가 아니라 소낙비에 젖어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속옷이 젖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주 최근인 지난 1993년초부터 검찰이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분야의 법집행을 강력히 하자 그제서야 젖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면서도 아직껏 속옷이 젖어서 닥쳐올 감기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강력한 통상압력에 기인하는 바이지만, 결국은 우리 기업에서 국내의 정보를 외국으로 흘려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적인 측면이 많음을 볼 때 우리들 자체의 작성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지적 재산권 보호가 되어야 학문과 예술 및 기술발전이 빨라진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도 요구된다.

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베른협약 가입과 관련하여 동협약과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보다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되며, 특히 소급보호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로서 더욱 면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

김문환/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국제특허연수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저작권법상의 대여권에 관한 연구』(공저),『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공저),『생명공학과 법』 등이 있으며, "뉴미디어와 저작권"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